

전주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가단13313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김수경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신무

피고B

변론 종결2020. 12. 1.

판결 선고2021. 1. 26.

주 문

-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12. 17. 체결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9. 12. 18. 접수 제1251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12. 17. 체결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22,307,69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2,307,69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3949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6. 'C는 원고에게 12,994,28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4. 29.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5.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배우자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8.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C, E, F, G 및 2006. 9. 3. 사망한 자녀 H의 자녀가 있으며, C의 상속지분은 2/13이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내지 '이 사건 1 내지 3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전주시 덕진구 I 지상 주택이 있었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9. 12. 17.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 I 지상 주택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한 후 이 사건 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2019. 12. 18. 접수 제125195호로,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9. 12. 18. 접수 제31488호로 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I 지상 주택에 대한 상속지분(2/13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C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이 사건 1, 2 각 부동산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2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1, 2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9. 12. 18. 접수 제125195호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3 부동산의 경우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3 부동산에 대한 C의 상속지분이 2/13인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후 피고가 이 사건 3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4,500만원에 J에게 매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가 전득자에게 사해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처분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전득자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구하거나 수익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가지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3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의 채권액보다 작은 위 2/13 지분 가액 상당인 22,307,692원(= 1억 4,500만원 × 2/13 지분, 원 미만은 버림.)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307,69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유진

별지